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97
----------	-----

제안연월일 : 2025. 10. .

제안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스포츠대회 등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지속 전개를 위하여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제7조(사무의 위탁)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대상사무)

○ 필요성

-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업무의 전략적 추진 및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 평창군체육회와 소속 종목단체의 네트워크와 전문성 활용을 통한 대회 유치 극대화 및 안정적인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지속 전개를 위해 전문성을 지닌 관리주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

- 위탁내용 :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 전반
- 위탁범위
 - 도단위 이상 전문·생활 체육대회 유치 및 운영
 -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포츠마케팅 관련 사업
- 수탁기관 : 평창군체육회(회장 지형진)

라. 위탁시설 개요

- 해당없음

마. 민간 위탁기간

- 2026. 1월 ~ 2028. 12월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제7조(사무의 위탁)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098,300천원(3년간)

구 분	소요금액(천원)			
	총 기간(3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5,098,300	1,698,300	1,700,000	1,700,000
대회 개최	3,958,300	1,318,300	1,320,000	1,320,000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1,140,000	380,000	380,000	380,000

※ 26년 스포츠마케팅 사무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본 사무는 매년 급증하는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지닌 관리주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세부 검토 내용

구분	검토내용
1.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 평창군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법에 의해 설립되고 감독받는 책임과 자격 있는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주민의 이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공공단체인 평창군체육회의 사무 수탁으로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과 지속 담보
3. 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 전임제 근로자 보유 등 충분한 인력 확보, 풍부한 종목단체 네트워크를 보유한 평창군체육회의 사무 수탁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 체육 분야의 전문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의 활용으로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활성화 기대
5. 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스포츠대회 유치·개최에 따른 대회별 실적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계량적으로 목표 설정 및 성과 측정 용이
6. 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수탁기관 지도·감독, 위탁사무 감사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제고
7. 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 현재 지자체 고유사무인 스포츠마케팅 사업은 지자체 직접 운영 방식과 스포츠재단 또는 지방체육회와 협업하여 서비스를 공급 방식이 존재하고 있음
8. 그 밖에 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매년 급증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평창군체육회 사무위탁을 통한 협업 방식이 적절함

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

- 해당없음

차.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카. 향후 추진일정

-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5. 12월
- 위탁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026. 1월(위탁금 반기별 교부)

[붙임1] 2026년 스포츠마케팅 사무 세부내역

연번	구분	대회명	사업비	비고
	합계		1,698,300	
	소계	26개 대회	1,318,300	
1	대회 유치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270,000	
2		키파컵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120,000	
3		평창컵 FIS알파인스키대회	25,000	
4		평창군수배 전국학생스키대회	20,000	
5		평창오대산천장사 씨름대회	210,000	
6		평창군수기 전국리틀야구대회	100,000	
7		대한스키협회장배 전국 롤러스키대회	20,000	
8		평창군수배 전국바이애슬론 스키대회	30,000	
9		강원일보 크레이지 골프대회	25,000	
10		평창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MTB대회	20,000	
11		평창군수기 전국 궁도대회	50,000	
12		HAPPY700평창 대관령 전국하프마라톤대회	70,000	
13		HAPPY700평창 강원특별자치도 파크골프 대회	17,000	
14		HAPPY700평창 강원특별자치도 게이트볼대회	26,000	
15		HAPPY700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 어울림게이트볼대회	12,000	
16		HAPPY700평창 클럽3인조 볼링대회	20,000	
17		윈터런 평창 마라톤 대회	50,000	
18		평창백일홍 강원특별자치도 동호인 테니스대회	20,000	
19		평창 패러글라이딩 페스티벌	10,000	
20		평창군 유소년 승마대회 트레킹 대회	15,000	
21		HAPPY700평창 생활체육 전국스키대회	15,000	
22		평창군수배 유소년 야구대회	30,000	
23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학생 바둑대회	40,000	
24		강원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28,300	
25		HAPPY700평창 프로볼링대회	60,000	
26		HAPPY700평창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15,000	
	소계		380,000	
1	전지훈련 유치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금(숙식비 등)	350,000	
2		전지훈련팀 유치 운영비(간담회, 홍보비 등)	30,000	

관계법령 발취

□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제3조(군수의 책무)

-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창군체육회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①~② 생략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생략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대상사무)

-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② 생략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충분조건: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
 - 2. 필요조건: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
- ② 생략

제7조(의회의 동의)

-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